Crowe

한울회계법인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1년 6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2021 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세무 및 법률정보

-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 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21 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 2021 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1.4.12]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12 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3 월 31 일로 종료함에 따라 **회계감독 방향에 대한 시장의 이해 제고**를 위해 「**2021 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

1. 기본 방향

□ **재무제표 심사제,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 등 기업회계의 대내외 신뢰를 높이기 위한 회계개혁 방안이 **순차적**으로 도입·시행중

◦ 새로운 제도가 본래 도입취지에 맞게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되도록 **세부시행방안을 마련·보완**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충실히 운영*하는 한편,

* 도입초기 **계도 위주의** 운영,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사항의 보완 및 세부 적용 방안 마련, 실무적용을 돕기 위한 **모범사례**, **유의사항 안내** 등

□ 회계분식 포착기능을 고도화하여 **한계기업, 취약분야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

⇨ **비반복적·과실 회계오류**는 심사를 통해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고의적 회계분식은 감리를 통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회계감리의 실효성을 제고

중점추진사항

2. 중점 추진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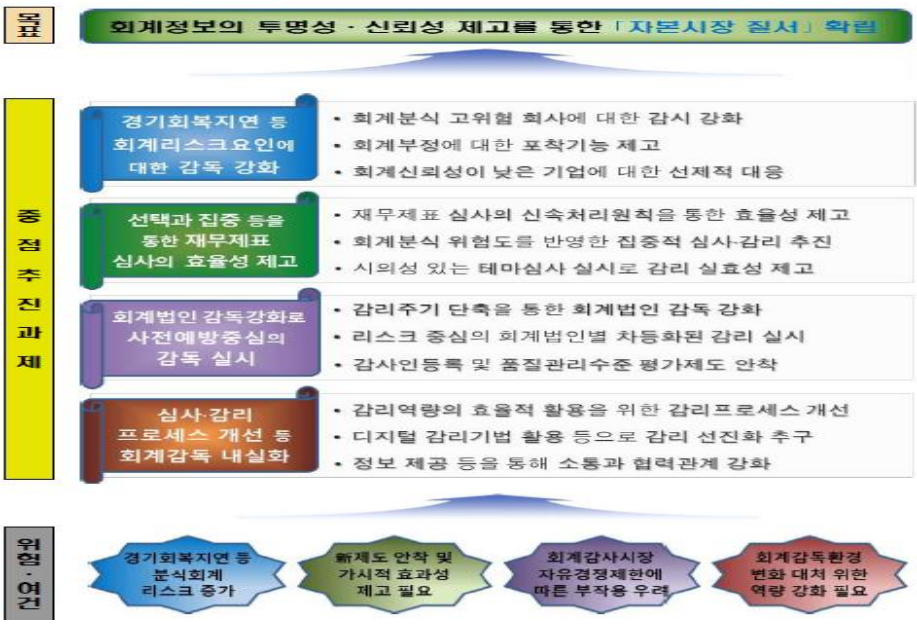

경기회복 지연 등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 강화

가. 경기회복 지연 등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 강화

◈ 경제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취약업종 감시 및 감리 사각지대 축소 등을 통해 회계분식 위험을 억제

□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 강화**

◦ **부실은폐** 및 **고의적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에 대하여 상시 **모니터링 강화**

◦ **장기간 심사·감리 미실시** 기업, **상장 직후 경영환경 급변**(실적 악화 등) 기업 등 **감독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

□**회계부정**에 대한 **포착기능 제고**

◦ **회계부정제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을 통하여 **정보입수 채널의 다변화 추진**

* 모바일앱 등을 통해 회계부정신고를 접수하고 홍보(YouTube 등)를 강화

□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을 심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감사인감리 결과를 통해 파악된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 등

※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 사례

▪ **(무자본 M&A)** 자기자본 없이 차입한 자금으로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한 후 회사자금을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선급금 등을 허위 계상

▪ **(최대주주 변경)** 사모 유상증자, CB 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변경된 최대주주(대표이사)가 은행계좌 및 이사·감사의 인감을 관리하며 자금 유용

▪ **(과도한 자금조달)** 정상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모펀드 등으로부터 출자, 대여, 주식연계증권(CB·BW 등)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 제고

나. 선택과 집중 등을 통한 재무제표 심사의 효율성 제고

◈ 재무제표 심사 신속처리원칙, 대상 선별 정교화 및 선택과 집중 방식 등을 통해 효율성 극대화

□ **재무제표 심사**의 **신속처리원칙**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내 종료**를 원칙으로 이행하고 **심사와 감리기능의 분리 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처리 도모**

□ **회계분식 위험도**를 반영한 **집중적 심사·감리** 추진

◦「**新회계분식위험 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식예측률을 제고**하고 **이상징후 포착방식을 정교화**

◦ **핵심적 주석 심사사항**(테마)을 선정·점검하고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제고

□시의성 있는 **테마심사 실시**로 **감리 실효성 제고**

◦시장의견을 수렴하여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조기에 선정·발표**함으로써 회사에 **충분한 검토 및 준비기간 부여**

* '21 년 중점심사대상('20.6.22. 사전예고) : ❶ 재고자산(제조업) ❷ 무형자산(정보통신업) ❸ 국외매출(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❹ 이연법인세(全 업종)

◦ 회계이슈별로 **체크리스트** 및 구체적인 **표준 심사방안**을 마련하여 **감리품질을 제고**하고 **소요시간을 단축**

※ '19 년~'20 년 재무제표 심사제 운영 결과(요약)

1. 심사처리 결과 (153 건 기준)

무혐의	경조치*1	감리전환
66 건 (43.1)	66 건 (43.1)	21 건 (13.8)

2. 평균지적률 (경조치+감리전환)

전체	표본심사*2	혐의심사*3
56.9% (87/153)	34.4% (33/96)	94.7% (54/57)

3. 평균처리기간

전체
91 일

( ) : 비중

*1 주의, 경고, 감경후 조치없음(종전에는 경조치도 감리위, 증선위를 거쳤으나, 심사제 도입 후 금감원에서 종결)

*2 무작위, 위험요소 등으로 선정된 기업, 상장예정기업 *3 외부제보, 일정 규모 이상 자진오류수정기업 등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실시

다.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강화를 통해 사전예방 중심의 감독실시

◈ 감사인(회계법인)의 감리를 전담하는 부서 신설*로 감사품질 제고 및 사전예방 중심의 회계감독업무 수행

* '21.2 월 회계심사국 내 2 개 팀에서 감사인감리실(4 개 팀)로 확대 개편

□ **감리주기 단축**을 통한 **회계법인 감독 강화**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를 **확대***1(최대 15 개)하여 **감리주기**를 **단축***2(최대 5 년 → 3 년)함으로써 회계법인 **감독의 적시성 제고**

*1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 : 7 개('19 년) → 9 개('20 년) → 15 개('21 년)

*2 (현행) 대형 2 년, 중형 3 년, 소형 5 년 → (개선) 대형 2 년, 그 외 3 년

□ **리스크 중심**의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 실시**

◦ **품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회계법인별 차등화된 감리**를 실시하여 감리의 **실효성 제고**

◦ **감사업무** 운영, **독립성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 **리스크가 높은 분야**에 대하여 **중점감리** 실시

라.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 내실화

□ **품질관리수준 평가 제도** 및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 제도 안착**

◦신규도입된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및 **감사인 등록제도** 등이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감독방안 마련** 및 **법규정비 추진**

※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시행중(예정)인 제도

▪ **(수시보고제)** 등록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관련사항, 주요 경영사항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감사품질관리의 효율성 제고

▪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 감사인이 품질관리수준을 자체평가한 결과를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회계감독에 활용(예정)

▪ **(회계법인 정보조회 시스템)** 감리결과, 사업보고서 등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정보를 쉽게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 '회계포탈'사이트를 개편·운영(예정)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 내실화

라.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 등 회계감독 내실화

◈ 불필요한 절차 최소화, 제재절차 합리화 등 재무제표 심사·감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보다 내실있는 회계감독 추구

□ **감리역량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감리 프로세스 개선**

◦ 효과적인 증거확보 등을 위해 **현장점검을 보다 활성화**하고 **외감법상 과징금 산정** 및 **부과**와 관련한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

◦ 감리 조치시 적용되는 **감사인 중요성금액**과 관련하여 적용 시점, 합리성 검증 기준 등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

□ **디지털 감리기법** 활용 등으로 **감리 선진화 추구**

◦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전산감리**를 **실시**하고, **회계분식 적발 관련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축적***

* 산업·시장에 대한 이해도 제고, 데이터 수집·가공·분석 능력 제고 등

□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통과 협력관계를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 및 **유용한 정보**를 **실무가이드** 및 **질의응답** 방식 등으로 안내

*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 (FY'19) 자산 2 조원 이상→(FY'20) 5 천억원 이상→(FY'22) 1 천억원 이상→(FY'23) 전체

◦ 심사·감리 **지적사례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결과 **유의사항을 감사인에 안내**하는 등 **지원과 계도 위주의 감독** 실시

◦ 심사·감리 **지적사례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심사결과 **유의사항을 감사인에 안내**하는 등 **지원과 계도 위주의 감독** 실시

※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의 주요 내용

▪ **(공개 취지)** 지적·쟁점사항에 대한 감독당국의 판단을 알려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 실무적용에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를 사전에 방지

▪ **(공개 내용)**지적사항과 시사점만 간략히 안내하는 방식에서 2019 년부터 회사의 회계처리, 지적근거·판단 등으로 상세화하여 공개

▪ **(공개 일정)** '19.12 월('18 년~'19 년 사례 29 건), '20.8 월('15 년~'17 년 사례 34 건), '21.2 분기('20 년 사례, 예정), '21.4 분기('11 년~'14 년 사례, 예정)

심사·감리 실시대상

3. 심사·감리 실시대상

◈ 금융감독원은 2021 년에 상장법인 등 **180 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5 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

※ 인력 현황, 코로나 19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실시계획 변경 가능

가. 재무제표 심사·감리

□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 **업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148 사) 대비 32 사 증가한 **180 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

* 상장법인 및 비상장인 금융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으로,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주의, 경고)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히 종결**하고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 회계심사·감리 결과 활용***1, **기타 위험요소***2, **장기 미감리** 등 **100 여사 내외**로 선정

*1 ①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된 회사비율이 높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 ②감사인감리 결과 개별감사업무 미비점이 중요하거나 과도하게 발견된 회사

*2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하여 **50사 내외**로 예상

* 자진 오류수정의 경우에는 중요성 4배 이상 금액 수정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수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나. 감사인 감리*

* 종전 품질관리감리에서 외감규정 제 23 조 제 7 항에 따라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 감리와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 감리를 포괄하는 '감사인 감리'로 용어 변경

□ 전년(9사) 대비 6사 증가한 **총 15개 회계법인**(대형 4사, 중형 3사, 소형 8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

◦ 감사인 **규모구분**에 따른 **감리주기**, **직전 감리 후 경과기간** 및 **직전 감사인 감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 8사**, **하반기 7사 선정**

< 감사인 감리 실시 주기 >

구 분		감리주기	회계법인수
대형	상장사 100개 이상 감사 또는 공인회계사 수 600인 이상	2년	8
중형	대형을 제외한 법인 중 상장사 30~100개 미만 감사 또는 공인회계사 수 120~600인 미만	3년	11
소형	그 외 회계법인	3년	21
합 계			**40**

□ **美 PCAOB**(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회계법인에 대한 미국 PCAOB와의 공동검사 주요 내용

▪ **(개 요)** 美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에 따라 **美상장기업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은 의무적으로 **PCAOB에 등록**하고 **정기검사**를 받음

▪ **(연 혁)**'07.3월 美 PCAOB와 공동검사 양해각서 체결이후 '20.12월까지 **5개 회계법인**에 대해 **총 18회 공동검사** 실시

▪ **('21년 계획)** PCAOB 등록 국내 회계법인(12개) 중 미국에 상장한 국내기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3개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 이중 **2개 회계법인**에 대해 공동검사 예정

* (**삼일**)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T, 매그나칩반도체, 쿠팡 (**삼정**) KB 금융지주, 엘지디스플레이, SK 텔레콤, 포스코, 그라비티 (**한영**) 한국전력

기대 효과

4. 기대 효과

□ 한계기업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 **회계취약부분** 및 **감리 사각지대** 등에 감독자원을 집중하여 **회계감시를 강화**하고

◦ **중대한 회계위반**은 엄중 제재를 통하여 **회계분식의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을 유도

□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충실히 운영하여 **신속한 수정공시 유도**, **경조치 신속 종결** 등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재무정보가 적시에 생성·유통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및 **투자자보호 강화**

□ **감사인 감리 대상 확대**,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등을 통해 **감사품질을 제고**함으로써 **사전예방 중심**의 회계감독 강화

⇒ **新외감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지속하고 극대화하여 회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회계투명성·신뢰성을 제고**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입니다.

□ '20.6.25.(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이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지원을 위해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①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②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

- 국세청에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①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소득세 · 법인세 공제 혜택 부여 ('23.12.31.까지 적용)

※ 공제금액·한도 등은 조특법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

※ (시행시기) 법안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 월 30 일까지 신고·납부

□ (신고개요)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6.30.(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대상자는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입니다.

*19년 일감떼어주기 신고자는 '21년 일감떼어주기 정산신고 대상임

□ (신고지원)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수증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신고안내를 도입하여 납세자가 좀 더 쉽고 편하게 도움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 사례도 게시하고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검증) 향후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

5 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 월 30 일까지 신고

□ (신고대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였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됩니다.

○ '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년 6월부터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하였습니다.

□ (사후검증) 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습니다.

○ 미(과소)신고자에게는 과태료(미·과소신고 금액의 10%~20%)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세무예규 판례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743, 2021.06.11)

(사실관계)

○ A법인은 연구소, 부속병원, OO사업본부, OOO대학교 등 4개의 사업부로 이루어진 법인이며,

- 사업부 중 OOO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을 충족하나,

- A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 4개의 사업부 외에 별도의 행정지원 부서가 있고, 행정지원 부서들은 4개 사업부의 회계, 인사, 예산 등의 행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4개의 사업부로 조직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사업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4개의 사업부로 조직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사업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사전법령해석법인 2021-147, 2021.05.25)

(사실관계)

○ 20XX.XX.XX. A법인의 주주들은 B법인과 경영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 임직원 주주들 중 대표이사를 비롯한 3인의 주주들은 B법인과 함께 XXX에 설립하는 합작회사와 관련하여 주주간 계약을 체결함

○ 20XX.XX.XX.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상 A법인 주식의 평가가액은 경영권 이전대가(경영권 프리미엄)를 반영하여 결정된 가액임

○ 한편, A법인은 소속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하는 A법인 주식은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B법인에 현금 또는 B법인의 주식을 대가로 B법인에 양도될 예정이며,

- A법인은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를 손금에 산입할 예정임

(질의내용)

○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된 주식의 거래가격을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주주들이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고, 양도의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다면 그 거래가격은 해당 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주식의 거래가격에 경영권 이전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업 무 소 개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i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